

日時 1996年3月25日(月) 午後3時

議事日程

1.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
2. 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3.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10.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關한再議要求의件
11.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2.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3.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4.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15. 1996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

附議된案件

o 報告事項 ... 3面

1.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 4面

2. 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 15面

3.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6面

4.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6面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8面

6.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8面

7.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8面

8.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9面

9.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19面

10.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關한再議要求의件(서울特別市長 提出) ... 22面

11.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 提案) ... 24面

12.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生活環境委員會 委員長 提案) ... 27面

13.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

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9面

14.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2面

15. 19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32面

(15時 33分 開議)

○議長 文一權;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第5次 本會議을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o 報告事項

○議長 文一權; 議事擔當官으로부터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官 安健基; 今番 第83回 臨時會期中 議案의 接受 및 回附, 其他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期間 中 접수하여 回附한 案件은 條例案 2件, 同意案 1件, 建議案 1件, 意見聽取 1件, 請願 2件으로, 이에 대한 所管 委員會別 回附事項을 말씀드리면,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은 財務經濟委員會에, 서울特別市學院의 設立·運營에 關한 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 關한 條例案은 文化教育委員會에, 홍진구 議員님 外 11분 議員님께서 提出하신 都市再開發法改正促求建議案, 瑞草洞 84號 광장에서 奉天洞 581番地 19號 區間의 都市計劃道路 變更決定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金洙福 議員님의 紹介로 冠岳區 奉天洞 1668番地 27號에 거주하는 안광호 外 619名이 提出한 東西幹線道路路線變更에 關한 請願, 李成浩 議員님의

紹介로 鍾路區 新營洞 162番地 9號에 거주하는 이건규 外 33名이 提出한 鍾路區 新營洞 158番地 一帶 風致地區 解除 및 再開發地區 指定 請願은 都市整備委員會에 各各 回附하였습니다.

이어서 決議案 處理事項을 報告드리겠습니다.

黃好淳 議員님 外 11분 議員님의 發議로 지난 95年 12月 27日 第13回 定期會 第7次 本會議에서 議決하여 이송한 衿川區 禿山洞 軍部隊移轉促求決議案에 대하여 國防部長官으로부터 同 軍部隊는 首都圈 방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작전상 중요한 部隊로 現 지역 주둔이 불가피하고, 衿川區에서 선정된 이전후보지는 작전상 부적절하다는 檢討結果 回信이 있어 이를 都市整備委員會와 黃好淳 議員님께 참고토록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運營委員會 委員長 提案)

(15時 36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運營委員會 金洙福 委員長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 委員長 金洙福;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運營委員會 委員長 金洙福 議員입니다.

지난 95年 7月 12日 第4代 서울特別市議會를 개원한 후

우리 147名의 議員들은 千百萬 市民의 삶의 질 향상과 市民의, 市民에 의한, 市民을 위한 활기찬 議政活動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市民福祉增進과 서울特別市市政發展에 크게 기여하여 주셨음을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 역시 議員 여러분과 함께 市政發展에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補佐官의 추진이 보류되는 등 열악한 地方 議會環境 속에서도 첫째, 議員倫理綱領 制定 公布 實施와 두 번째는 서민생활가계지원을 위한 交通料金引上抑制決議案 제안, 그리고 세번째, 千百萬 市民의 건강을 위한 맑은 물供給에 관한建議案 提案과 네 번째는 우리 서울의 환경정화를 위한 서울特別市環境保全對策建議案 提案으로써 環境改善實施와 環境部長官이 우리 市議會 建議를 受容하여 環境改善負擔金을 종전 9%에서 50%로 서울特別市에 교부토록 결정한 것을 비롯하여, 다섯번째는 서울特別市 地方自治行政에 市民 참여 신장을 위한 알찬 行政事務監査와 豫算決算 條例審議, 그리고 市政質問에 의한 市 行政刷新促求實施 등 보람찬 議政活動 등은 議長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議政活動으로 評價되는 것으로써 運營委員長으로서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張學魯 부정비리 사건 등으로 大統領 측근 부패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그간 大選資金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大統領의 發言은 이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온 國民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第14代 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議決하기 위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고자 합니다.

本 建議案은 本人의 提案과 文一權 議長님을 비롯한 17人

議員 찬성으로 運營委員會에 提案하여 表決結果 찬성 9人, 반대 3人의 議決로 可決하고 금일 本會議에 上程 提案하였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2·12사태와 비자금 조성, 사용 등에 관하여 不法을 자행한 前職大統領에 대한 司法審判이 憲政史上 최초로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울地方法院 審査過程 中에서 決定的으로 입증되고 노출되고 있는 第14代 大統領選舉支援資金懸案問題에 대하여 金泳三 大統領에 대한 全 國民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바, 第14代 大統領選舉 支援資金에 있어서 前職 大統領 盧泰愚 氏로부터 3,000億원을 받았다는 說뿐만이 아니라 쓸 만큼 주었다는 前大統領 盧泰愚의 아들 노재현 씨의 發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번도 金泳三 大統領은 여기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各 言論社를 상대로 應당의 應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시인하는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張學魯事件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났듯이 金泳三 大統領의 道德性에 대해서 삼척동자도 믿지 못하는 狀況이 되고 말았습니다.

全·盧 두 大統領의 불법 不正蓄財로 모은 돈이 과연 누구의 돈입니까? 國民의 피 같은 돈이요,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의 돈입니다. 우리 國民 서울市民의 혈세를 착복한 全·盧 쿠데타 집단으로부터 받아썩었다는 金大統領의 대선자금은 마땅히 公開되고 國民에게 반납되어야 합니다. 홍준표 검사가 新韓國黨에 入黨하면서 발표를 했듯이 장물아비의 장물은 그

것으로써 충분한 범죄의 요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조차 인정한 犯法事實은 온 천하에 공개되어야 하며 國民들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特別市議會가 第14代 大選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提案하는 것은 千百萬 市民의 뜻을 따르는 필요충분조건과 妥當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提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本 建議案의 主要決議事項으로는, 첫째, 14次 大統領選舉 支援資金 造成過程과 모금한 大選 支援資金 總額을 公開하여 줄 것을 促求하고,

둘째, 大統領選舉 支援資金 總額과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제출한 大選 選舉費用 會計報告 금액과 엄청난 差額이 있다고 보는 언론매체와 각 政黨들의 주장에 대하여 執權黨 大統領으로서 명명백백하게 大選支援資金 전모를 공개하여 주기를 강력히 促求한다.

셋째, 15代 國會議員 總選 選舉運動 爭點으로 부각되고 있는 大選支援資金의 造成과 사용에 대한 부도덕성에 대하여 大統領의 政治的 의지와 결단을 표명하여 주기를 促求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本議員이 提案하고 17人 議員이 연서 서명한 우리 서울特別市議會가 우리나라 民主主義의 憲政史 발전을 위하여 提案하는 第14代大統領 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可決하여 주시어 민족사 정립과 찬란한 조국의 발전에 힘차게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새봄을 맞이하여 議員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하여 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機;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運營委員長의 提案說明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반대토론 신청한 議員이 네 분 계십니다. 네분이 계시는데 李聲九 副議長, 金聖浩 議員, 洪淳喆 議員, 崔光雄 議員 네 분이 반대 토론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네 분이 숙의를 하셔서 두 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이 타협을 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李聲九 副議長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세요.

○副議長 李聲九; 李聲九 副議長입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여러 가지 미비한 여건에서 議政活動을 하시느라 늘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副議長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運營委員會에서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本會議에 上程하였는바, 本議員은 同僚議員 여러분들에게 本 件의 철회를 提案하고자 단상에 나왔습니다.

本議員은 副議長으로서 선출된 뒤 우리 서울시議會가 所屬議員들의 黨利黨略에 휩싸이지 않게끔 本議員 스스로도 노력하였으며, 또한 여러 議員님들께도 당 색깔을 자제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 권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서울시議會가 처리해야 할 사안의 대부분이 千百萬 서울市民의 살림살이와 市民의 便益에 관계된 것들일 뿐 아니라 우리 서울시議會가 서로 소속된 政黨의 利益을 주장하는 정치관으로 운영되었을 때 서울市民과 言論에서는 필연코 서울시議員들이 國會議員 흉내나 내면서 못된 것부터 배운다고 지탄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本 件이 오는 4月 11日 總選에서 政黨 間의 뜨거운 政治的인 쟁점이라는 것은 本議員의 설명이 없어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 문제가 서울시에서 채택되었을 때

이 한 件으로 우리 서울시議會는 완전히 특정 政黨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따라서 저는 우리 서울시議會가 어느 특정정당의 黨利黨略을 대변하는 시녀로 전락되지 않도록 모두 같이 서울시議會를 굳건히 지켜줄 것을 호소하면서, 아울러 運營委員會에서 提案한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철회할 것을 정식으로 提案하면서 저의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했습니다.

방금 李聲九 議員으로부터 反對하신다는 發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贊成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

李聲九 議員의 反對討論에 대해서, 反對하신다는 發言에 대해서 贊成討論을 지금 물었습니다

(場內 騷亂)

가만히 계세요.

네 사람이 調律하라는 것은 時間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議長은 네 분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위기 좋게 똑같은 反對討論을 네 분이 하니까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場內 騷亂)

우선 反對討論에 대해서 贊成討論을 하시겠느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贊成討論을 申請하신 禹元植 議員님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議員; 저는 生活環境委員會에 所屬되어 있는 禹元植 議員입니다. 政黨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입니다.

제가 政黨을 얘기하기 전에 生活環境委員會 所屬이라고 한

것은 저의 身分은 政黨人이라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議會 議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贊成討論을 하는 理由는 제가 서울시議會에 출마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활동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市民들이, 그리고 우리 國民들이 政治에 대한 不信이 너무나 큼니다. 제가 議會에서 活動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政治하는 놈들 믿을 수 없어,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社會의 이제까지 權力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國民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市民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權力을 잡기 위해서 四捨五入 改憲을 하고, 그 다음에 權力을 잡기 위해서 유신을 만들어서 長期執權을 하고, 軍事政權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리고 3黨 合黨을 통해서 權力을 잡고, 그 過程에서 親日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우리 社會의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獨裁權力에 아부했던 사람들이 한 번도 國民의 비난을 받았지만 처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政治風土가 黃金萬能主義, 權力만 있으면 된다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없다는 패배주의가 만연한 것이 우리 社會의 實情입니다. 이것이 우리 서울시議會가 아무리 잘 해도 정치꾼들은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不信의 깊은 수렁에 빠진 理由입니다. 그 수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서울市議員이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議會에서 중요한 제가 속해 있는 生活環境委員會의 쓰레기 處理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市民의 同意를 얻기 위해서는 서울市民들이 앞장서서 그 동안 잘못 되어있는 權力의 不正 腐敗와 國民들의 基本的인 人權에 대한 탄압과 이런 것에서

부터 싸우려고 하는 단호한 의지가 있어야만 政治人으로서 信賴하고 10萬 市民의 代表로서 認定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代에 들어와서 저는 제가 했던 일중에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쓰레기청소에 뭐하나 이것 잘해라 이것이 아니고, 지난번 5·18特別法 制定을 위한 우리 決議案 낸 것, 그리고 서울시議員 108名이 모여서 서울시議會 안에서 2泊 3日 동안 농성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서울시議員들만 한 것은 아니지만 國民들의 열화와 같은 의지와 서울시議員 108名의 2泊 3日 동안의 농성과 이런 힘들이 합쳐져서 全斗煥·盧泰愚 쿠데타 세력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저는 金泳三 政權이 들어서서 정말 改革을 잘하고, 정말 우리 社會를 바른 社會로 만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初期에 그런 노력을 할 때 지지도 하고 支援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칼국수를 먹으면서 청교도생활을 한다는 그 뒤편에서 張學魯 같은 사람들이 市民의, 國民의 그 엄청난 돈을 뒤에서 빨아먹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 政權의 탄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政權의 탄생부터 우리 서울시議員들이 10萬을 代表해서 밝혀 나가는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러한 의혹이 증폭돼서 政治圈에 대한 不信이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막지 않고서는 서울시議員의 그 役割을 제대로 遂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疑惑을 하나하나 밝혀 나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마치 政黨의 黨利黨略인 것처럼, 어느 일개인의 下手人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역사가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全斗煥, 盧泰愚 정말 잘못됐다고 했을 때 權力에 서있던 사람들이 뭐

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때 그 사람들은 權力의 자리에 서서 빨갱이 같은 놈들, 나쁜 놈들, 社會를 혼란시키는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시議會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느 政黨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미 쓸 만큼 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張學魯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까지 고향을 빨아먹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밝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서울시議員들로부터 출발해서 政治人들이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받을 수 있도록 변해 가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서울시議員이 당연히 해야 될 이런 問題提起에 대해서 黨利黨略, 아니면 하수인 이런 식의 表現을 우리 쓰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卑下요, 政治人 모두에 대한 格下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시議會가 정말 서울시民들로부터 신뢰받는 10萬의 代表가 되기 위해서 政治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과 폐습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깨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일에 동참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면서,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 贊成發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聖浩 議員 나오셔서 反對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浩 議員; 運營委員會 所屬 生活環境委員會 金聖浩 議員입니다.

本議員은 오늘 第83回 臨時會를 마무리하는 이 本會議場에서 議會 執行部の 議事進行 未熟을 개탄하면서 서글픈 心情으로,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憐憫의 정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4代 大選資金과 서울시議會와 무슨 相關關係가 있습니까? 서울시民의 福利增進과 市民生活의 便益에 寸음을 아끼면서까지 신경써야할 선량한 우리 서울시議員이 왜 진흥당 중앙 정치관에 끼어들어 대선자금어 어떻고, 20億원 플러스 α가 어떻고, 特定政黨의 公薦장사 公薦保證金까지 論議해야 합니까?

오늘 이 決議案이 本會議場에 上程되기까지는 議會法이 무시되고, 16名의 運營委員이 있고 兩黨 幹事가 있는데도 懇談會 내지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과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떳떳하게 우리 서울시議會 規則에 의거 發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午前 運營委員長은 독단으로 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 運營委員會 會議場에 會議資料를 配布해야 되는데도 運營委員長은 會議資料를 움켜쥐고 끄끙 앓고 있더라고요. 밤새 中央黨의 고명하신 분이 사주를 했거나 지령이라도 내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쓸 데 없는 충성경쟁으로 오늘 이 本會議場을 과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本會議場을 과행으로 몰고 간 責任은 전적으로 議會 指導部の 責任입니다.

(場內 騷亂)

조용히 해요, 상대방의 의혹을 제거하려거든 자기 눈 속의 대들보부터 제거하고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신성한 서울시議會를 政治場化하는데 앞장서지 마십시오.

더욱이 決議案 內容을 보면 金泳三 大統領就任 以後 청교

도적 신념으로 推進한 一連의 改革作業이 人氣迎함에 의해 명분이 없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議會에서 論議될 事項이 아니라고 봅니다.

地方議會에서 밀어붙이기식 決議案 通過로 問題가 하나 같이 解決되는 것은 아닙니다. 議長을 비롯한 運營委員長에게 本議員은 이 決議案 上程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신성한 서울市議會에서 만큼은 政爭을 말자고 했습니다. 決議案 上程이 國민회의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까지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 지경까지 오고 말았고, 議長과 運營委員長은 議會 과행운영의 責任을 지고 辭退할 것을 勸告합니다. 사퇴치 않을시 解任決議案을 提出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金聖浩 議員으로부터 反對하신다는 發言이 있었습니다.

贊成討論하실 議員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상으로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할 것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를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反對하시는 議員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參席議員 94名 중 贊成 77名, 反對 4名, 棄權 13名으로
第14代大統領選舉支援資金公開促求決議案은 可決되었음을 宣
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결의안

(뒤에 실음)
.....

2. 特別委員會活動結果報告의件

(16時 03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特別委員會 活動結果
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우리 市議會에서는 지난 8月 16日 第79回 臨時會에서 倫理
特別委員會 等 6個 特別委員會를 구성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여러 委員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동안 분야
별로 市政發展에 많은 일을 推進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6個 特別委員會 中 倫理特別委員會, 地方自治發
展特別委員會, 都市施設物安全點檢및災害對策特別委員會, 女
性特別委員會와 環境保全對策特別委員會가 活動을 終了하고
그 結果를 報告하여 왔습니다.

각 特別委員會別 活動結果報告는 이미 의석에 配付하여 드
린 活動結果報告書로 같음하고자 하오니 參考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特別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의 눈부신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參照)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뒤에 실음)

.....

3.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4.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0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內務委員會 慶奎福 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慶奎福 議員; 內務委員會 所屬 新韓國黨 慶奎福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과 先輩, 同僚 議員 여러분, 지난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報告드리면, 現行 條例는 서울特別市 自體監査의 公正性和 專門性을 補完하고, 監査行政에 市民의 參與를 誘導하며, 信賴行政을 구현하기 위하여 1996年 1月 15日 條例 第3256號로 現行 條例를 制定하였고, 條例는 11個 條項,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第7條 第1項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監査1擔當官이 된다고 規定하고 있는 것을 1996年 1月 15日에 서울特別市の 組織을 대대적으로 改編하여 規則 第2726號로 서울特別市職制規則을 改正하므로 職制改編에 따라 職名이 改正 變更되었으므로, 現行 條例中에 변경된 職制의 職名대로 監査1擔當官을 監査擔當官으로 改正하였으며,

다음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關한條例中 改正條例案은 1993年 9月6日 條例 第3021號로 制定, 1995年 6月 10日 第1次 改正을 거친 條例로서 18個 條項, 附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現行 條例 第15條에는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事實調查 等を 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幹事와 事務職을 둘 수 있도록 規定하고, 그 幹事와 事務職員이 任命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他 部署 公務員으로 任命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하면 責任性 確保나 非能率性이 예상되므로 總務處, 國會事務處, 選舉管理委員會 및 釜山廣域市와 같이 幹事는 그 業務의 擔當部署인 監査室長을 當然職으로 하고, 事務職員은 監査室 所屬職員中에서 市長이 任命토록 하여 他部處와 형평을 유지 하고, 業務處理에 대한 實定法을 確保하기 위해 當然職으로 改正하여 合理的 運營을 도모하고자 1996年 3月 23日 第1次 內務委員會에서 監査室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

報告 및 심도 있는 質疑와 討論過程을 통하여 두 條例案을 改正하고자 하는 이유가 妥當하다고 判斷하여 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內務委員會에서 審査한 原案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內務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監査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 및 運營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關한조례중개정
조례안

(뒤에 실음)

5.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6.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7.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8.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9.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11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5항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제6항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제7항 서울特別市 재정계획심의위원회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제8항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운영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제9항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朴南植 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南植 議員; 재무경제위원회 朴南植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5件의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의 주요내용은 서울特別市 본 청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이 豫算編成 부서의 소관 별 歲入·歲出豫算 요구시 직종별 정원표,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등 이외에 기타 豫算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根據條項을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同 改正條例案이 歲入·歲出豫算을 豫算編成 부서에 요구할 때 제출하는 첨부서류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개정됨에 따른 조례정비 차원으로 原

案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投資機關經營評價委員會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同 案件은 1996년 1月 15日 서울特別市職制改編에 따른 後續措置事項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特別市財政계획심의위원회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1996年 1月 15日 서울特別市 직제개편에 따라 委員長 名稱變更과 當然職 위원 調整, 그리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예산총괄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는 시 재정계획을 審議할 때에는 서울시 政策方向과 상호 연계되어야 하므로 市政開發과 政策業務를 總括하는 정책기획관을 當然職 委員으로 추가하는 것은 妥當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위원회 간사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豫算總括擔當官으로 변경한 것은 1996年 1月 15日 서울 市 職制改編에 따른 後續措置事項이므로 原案可決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및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동 改正條例案은 委員長을 副市長에서 行政1副市長으로, 간사를 投資管理擔當官에서 豫算2擔當官으로 變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96년 1月 15日 시 職制改編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기에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에 대한 審

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案件의 주요내용은 蘭芝島 쓰레기埋立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고, 사업소장으로 補하며, 사업소의 직제, 事務分掌 및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蘭芝島 쓰레기埋立地가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고, 쓰레기埋立地 및 關聯施設의 유지관리와 埋立地 안정화사업등 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權限受任을 받은 同 事業所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出席議員 전원 贊成으로 原案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配布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여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 報告한 서울特別市豫算編成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投資機關經營評價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民資誘致事業審議委員會構成 및 運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蘭芝島管理事業所設置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각 5건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난지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뒤에 실음)

.....

10.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對한再議要求의件(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1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10항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再議要求의 건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同 條例案은 1996년 2월 29일 제 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집행기관에 移送하였으나 1996년 3월 16일 서울特別市長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 및 同法 제98조제1항의 規定에 의거 同 條例案을 다시 議決하여 줄 것을 要求해 온 안건입니다.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은 配付해 드린 油印物로 같음 하고자 합니다.

本 案件의 所管委員會인 財務經濟委員會 文錫珍 委員長 나 오셔서 再議要求에 대한 意見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 文錫珍; 존경하는 文一權 의장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財務經濟委員會 문석진 委員長입니다.

지난 地方財政交付金法の 개정으로 인해서 저희 서울시議

솨가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을 7.5%에서 10%로 인상을 해서 9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공포 내용을 우리는 반영을 해서 95년 12월 27일 서울特別市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서울시장이 1995년 12월 31일 공포 시행함으로써 遡及課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지방세법에 의하면 개정된 주민세율 10% 인상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하나 1995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10%를 적용하는 소급적용의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제 82회 임시회 때 저희 의회에서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주민세율을 10%로 적용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년도가 2개년도에 걸친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할 때 세부집행상 混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재의해 왔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관련 法規나 判例 등에 비춰 볼 때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지만 납세자 보호측면에서 집행부와 절충하여 새로운 개정안을 위원회 發議로 곧 提出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종전 개정안과 다를 바 없지만 附則 단서조항에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주민세율은 7.5%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개정안과 다른 내용이 없지만 納稅者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료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과세기간이 종료된 所得稅, 法人稅 등에 대한 주민세율은 7.5%를 적용한다고 부칙에 못을 박음으로써 아예 오해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이 안건이 이번 3월말까지 공포되어야 하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즉, 서울에 대한 법인이 이러한 금액으로서 1,550여 億원이 해당이 되고, 이번 5월 소득세 신고까지 따르면 2,300億원에 이르는 서울 시민의 주민세가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재의 요구된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우리 委員會 안을 가결시켜 주시고, 이 재의안에 대해서는 起立하지 마시고 否決하여 주셔서 저희가 종전에 냈던 案件은 否決處理하고, 바로 다음에 折衷案으로 부칙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된 案件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이를 명확히 規定하지 못 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는 조례로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한바,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이루어졌으므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 요구된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起立 表決)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9조제4항에 의거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1.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財務經濟委員會 委員長提案)

(16時 23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제11항 서울特別市稅條例中 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재무경제위원회 李廷義 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廷義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李廷義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發議한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29일 地方財政交附金法 제11조제2항 및 附則 제2조의 개정으로 서울特別市, 광역시 및 도는 시·도세 총액의 26/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1996會計年度부터 1998會計年度까지 教育費特別會計로 轉出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地方自治團體의 負擔分에 대한 재원 마련 등 地方財政 확충을 위하여 1995년 12월 6일 地方稅法을 改正하여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所得割 標準 세율을 7.5%에서 10% 인상하여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도록 하였습니다.

地方稅法の 개정공포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의회는 1995년 12월 27일 세율인상을 주요골자로 하는 서울特別市稅條例를 改正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特別市長은 1995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조례 제3244호로 공포하여 시행함으로써 所得間 형평성의 문제와 기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할 주민세의 소급과세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 所得間 形평을 도모하고 소급과세의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상된

住民稅所得割 세율은 9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하도록 서울특별시세조례 부칙 제2항을 다시 개정하고자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지난 제82회 임시회 때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事務年度가 2개년에 걸친 법인의 경우에는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무행정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지난 3월 16일 동 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편, 條例上의 規定을 일부 명확히 하여 준다면 서울시의회에서 요구한 바와 같이 시행하겠다는 재의를 집행부에서 요구하여 왔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몇 차례에 걸친 熱議 끝에 지난 임시회 때 개정한 條例案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더라도 별로 무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關聯公務員이 執行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회에서 번거롭더라도 이를 명확히 하여 주는 것이 세율적용의 混亂을 방지하고 納稅者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3월 22일 본회의 종료 직후 동 개정안을 議會 委員會案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改正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住民稅 稅率引上은 1996年 1月 1일부터 1998年 12月 31日까지의 期間 中에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所得稅, 法人稅 및 農地稅에 대한 住民稅에 適用하고, 1995年 12月 30日 이전에 課稅期間이 종료된 所得稅, 法人稅 및 農地稅에 대한 住民稅率은 7.5% 적용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委員會 會議時 執行部로부터 여기에 대해 異議가 없으며, 또한 서울시教育廳에 대한 지원은 차질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配布하여 드린 同 條例改正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께 번거로움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委員會 案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同僚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提案한 서울特別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12.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生活環境委員會 委員長 提案)

(16時 28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 關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生活環境委員會 禹元植 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禹元植 議員; 生活環境委員會 所屬 禹元植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本議員이 우리 委員會에서 發議한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市가 提出하여 1995年 12月 26日 서울市議會의 議決을 거쳐 1996年 1月 15日 公布된 서울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 第4條第3項의 내용이 그간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論議된 내용과 다르게 해석될 소지가 있어 同 條例案을 改正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改正內容은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 및 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 第4條第3項에서 資源回收施設이 설치되어 있는 地域 外의 生活廢棄物을 반입 처리하고자 할 때 關係區廳長에게만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동안 住民協議體와의 합의를 거쳐 他區 쓰레기를 반입하기로 한 生活環境委員會에서의 논의된 바와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民選 서울市는 열린 行政, 住民이 함께 하는 行政을 가장 중요한 市政方向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에 따라 燒却場運營主體를 서울市 關聯 自治區 및 住民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市政의 취지에 맞게 本 條例 第4條第3項을 改正하여 市長은 資源回收施設이 설치되어 있는 地域 外의 生活廢棄物을 반입하여 처리할 때에는 關係區廳長과 住民協議體와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燒却場 施設運營이 될 것으로 思料되어, 本 件 改正條例案을 지난 3月 23日 第1次 生活環境委員會에서 議決을 거쳐 委員會案으로 發議하게 되었으니 配付해 드린 改正條例案대로 可決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生活環境委員會에서 提案說明한 서울特別市資源回收施設設置促進및周邊地域支援等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關한조례중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13.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30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水資源管理委員會 魯泰塾 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魯泰塾 議員; 존경하는 文一權 議長님, 그리고 千百萬 市民

의 福祉增進과 地域社會 發展에 헌신하고 계시는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議政發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올리게 된 本議員은 國民會議 所屬 蘆原區 第7選舉 區 出身 魯泰塾 議員입니다.

우리는 서울市民 뿐만아니라 首都圈 지역주민들도 휴식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즐겨 찾고 있는 훌륭한 漢江市民公園을 갖고 있습니다. UN은 3月 22日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하여 水資源 보전과 개발에 동참할 것을 세계 각국에 촉구하였습니다. 이 날을 맞아 우리 서울市에서는 汝矣島 漢江市民公園에서 環境團體 등을 주축으로 한 漢江 水中清掃 示範行事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市民들이 漢江公園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더맑고 푸르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기원하면서 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 設置 및 運營에 關한 條例中 改正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本 案件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本 條例는 市民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漢江에 市民利用施設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制定되었으나 그 동안 運營上 몇 가지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漢江市民公園에 市民生活體育에 필요한 體育施設의 設置 範圍를 확대하고 둘째, 항공기 운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른 離·着陸 셋째, 이미 설치 조성되어 있으나 條例에 누락된 어린이놀이터, 자연학습장, 便宜施設 등을 이용시설에 포함시키며 넷째, 이용시설의 委託運營 대상을 國民體育의 진

흥, 또는 社會體育의 지도 육성을 目的으로 設立된 非營利法人 또는 團體로 제한하던 것을 관련시설 운영에 적합한 非營利法人에게도 가능토록하고 다섯째, 수영장 委託運營에 따른 收益金을 수탁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規定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議長,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서울特別市長으로부터 96年 3月 16日 제출된 本 案件은 우리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執行部側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그리고 委員들의 심도 있는 討論과 審査를 거쳐 수영장 등 附帶施設에 대한 黑字가 발생할 경우 漢江市民公園 개선에 직접 재투자하도록 하여 市民의 福祉增進에 대한 수혜가 곧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修正한 대로 可決된 것입니다.

本 案件이 오늘 本會議에서도 滿場一致로 可決될 수 있도록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審査報告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修正하여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漢江公園市民利用施設의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면 水資源管理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修正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수정안

(뒤에 실음)

.....

14.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5. 19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6時 35分)

○議長 文一權;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5項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財務經濟委員會 金相男 議員 나오셔서 審査結果를 일괄해서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相男 議員; 財務經濟委員會 金相男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두 件의 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립니다.

먼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새로운 行政需要가 유발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過積車輛團束 등의 업무가 自治區에서 市로 이관됨에 따른 管理人力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國家職의 地方公務員 轉換 47名, 新廳舍建立推進要員 20名, 監察班要員 10名, 資源回收施設運營人力 10名, 綠化推進 및 施設計劃推進人力 6名 등을 增員하고, 交通社會問題研究員 1名을 감축함으로써 本廳 定員 92名을 보강하고, 消防學校 應急處置 教官要員 1名을 증원하고,

過積車輛團束業務가 自治區로부터 市로 이관됨에 따른 管理人力 158名 등 事業所 정원 159名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정원 총수는 本廳이 2,465名, 直屬機關이 5,162名, 事業所가 9,807名 등으로 總 288名이 증원되나 國家職公務員 47名の 감축과 自治區 過積車輛團束人力 등 定員 194名이 減縮되어 실제로는 47名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審査한 결과, 新廳舍建立 推進과 資源回收施設의 建設 運營 등 行政需要가 증대되는 부분의 인력 보장은 妥當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監察班要員 10名에 대하여는 業務性格과 業務量을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判斷하여 監察班要員 10名을 제외한 修正案을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96年度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變更計劃案에 計上된 財産은 賣却 1件으로 瑞草區 方背洞 1030-3에 소재한 市有地 198坪을 方背聯立再建築組合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同 件은 지난 13回 定期會 때 95年度 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賣却對象으로 上程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賣却對象에서 제외되었던 財産입니다.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에 의거 事業施行者인 住宅組合에 타에 우선하여 賣却할 수 있고 또한 同 土地를 賣却하지 않을 경우에 組合의 再建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執行部の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原案 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を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同僚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修正하여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96市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一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特別市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뒤에 실음)

.....

○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로서 第83回 臨時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會期 중에는 3日 間의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통하여서 市政 전반을 폭넓게 재조명하면서 市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市政이 行政需要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討論하는 등 成果 있는 會期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짧은 常任委員會 活動期間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市民의 의견을 수렴하고 市民生活과 밀접한 案件을 심도 있게 처리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다음 會期에도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40分 散會)

○出席議員 123人

慶奎福	高光哲	高溶振
郭順英	具哲會	金廣洵
金洛淳	金明坤	金明炫
金芳任	金相男	金成洙
金成春	金聖浩	金勝子
金信浩	金寧剛	金永俊
金永春	金永姬	김장주
金在京	金在仁	金種求
金鍾來	金周喆	金天柱
金亨吉	金洪奎	盧永奭
魯泰塾	文錫珍	文龍子
文八卦	閔庚燁	閔鍊植
閔泳三	朴謙洙	朴南植
朴德基	朴相根	朴洙桓
朴時河	朴贊國	朴贊秀
白南善	白聖德	成聖鏞
宋德華	宋仁回	申垆植
安順德	梁敬淑	梁東錡
魚潤慶	呂鼎九	禹元植
劉大運	劉俊相	尹福永
李康玉	李康珍	이금라

李達源	李斗鶴	李善宰
李成浩	李始英	李亮漢
李英順	李容富	李允中
李子源	李廷義	李智文
林靜枝	林鍾化	張夏雲
田炳萬	鄭炳權	鄭炳仁
鄭福辰	鄭善順	鄭水華
鄭鎮宇	鄭鎮澤	鄭泰宗
鄭韓植	趙上男	趙旬衡
池龍鎬	池昌洙	車星煥
崔光雄	崔永運	崔鍾午

崔俊和	崔昌奎	崔炯莘
黃炳五	黃仁明	黃正植
홍진구	金洙福	金東洙
黃好淳	許光泰	洪樂元
洪性龍	洪淳喆	洪月杓
金錫浩	金亨根	白懿宗
孫馥	吳世根	劉起鍾
金箕英	文一權	李聲九
李載震	張精一	崔鍾德

書面答辯書

【서울特別市】

○崔炯莘 議員;

(質疑要旨)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청산금부과 처분이 법원판결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결된바, 조속히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答 辯)

○현행 자력재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청산금 부과기준일은 도시재개발법 제65조를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적용하여 자치구 조례에 의거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고지했으나

○사업장기화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많아지자 도시재개발법 제53조를 준용하여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징수청산금은 소급 적용하여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재산정 요구하고

-지급청산금은 현행 분양처분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자치구에 조례 개정기준을 시달하였으나 소급적용은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소급적용이 곤란한 사유로는

-대법원 판결내용에서 분양처분일 기준 부과는 위법이나 기처분한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미 납부 및 교부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이미 납부한 사람의 청산금 반환요구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며

-사업이 장기화되어 공사착수 전 시점으로 토지가격평가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o대안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청산금 납부방법을 연 5%이자에 10년 분할상환토록 하였습니다.

o아무쪼록 법률적·행정적으로 소급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要旨)

약국개설등록명 의와 사업자등록상의 명 의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에 대하여 관할 약사회, 보건소, 세무서가 합동단속 펼칠 용 의?

(答 辯)

o약사법 제16조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은 약사가 약국을 운영 관리할 때 제3자의 간섭이나 영향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당해약국의 시설 등에 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보아 약국개설자명 의와 사업자등록증 명 의자가 상이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처분을 의뢰하여 왔지만,

o최근 사법부는 사업자등록자와 약국개설자 명 의가 상이한 업소도 면허대여로 판단하지 않고 있어, 우선 명 의일치를 중용하고 정정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에 통보, 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여 조치하고 있으므로 합동단속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o명 의가 상이한 업소는 약국개설자의 근무여부 등 면허대여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여 명 의를 일치토록 하겠습니다.

(質疑要旨)

자치구의 위생과는 공중보건학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함에도 모두 행정직으로 공중위생에 관한 지도와 감독이 불가능하며 환경과장은 행정직이 18명 등 환경직 1명도 없는데, 위생과장은 보건직으로, 환경과장은 전원 화공, 환경, 보건직으로 임명하는 등 직제개편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答 辯)

○자치구의 위생과는 식품, 공중위생업소 감시단속 및 행정처분과 협정요금 지도 등 일반행정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생과장을 행정직 단수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경우 환경공해 예방, 홍보, 행정처분 업무 등으로 일반 관리업무와 전문기술업무가 복합되어 있어 행정, 화공 또는 보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의 식품위생계장과 공중위생계장의 경우 공중보건 위생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필요로 하여 행정, 수의 또는 보건직으로, 환경과의 환경관리계장과 생활공해계장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 환경, 보건 또는 화공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3호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생관리업무가 현재의 단속 및 행정처분 단계에

서 점차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쾌적한 공중환경 등의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고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는 환경보전 및 관리업무의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전문기술직이 보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치구의 위생과 및 환경과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 전문 기술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자치구로 하여금 시행을 권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質疑要旨)

강서구 등촌동 366일대 풍치 지구로 지정한 명분과 실익이 상실됐는데 이를 해제할 용의는?

(答 辯)

○강서구 등촌동 366번지 일대의 풍치지구는,

-이 지역은 국군통합병원 주변일대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함으로써 병원 주위환경정화 및 김포가도 미관유지를 위해 건설부고시 제313호('72.8.4)로 최초결정 되었으며,

-'77.12.3. 건설부고시 제235호로 풍치지구재정비시 본 지역 일부를 풍치지구로 재결정된 지역임

○본 지역일대 풍치지구는 백석근린공원과 등마루근린공원 주변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므로 해제는 곤란하나, 현재 서울시 전역 풍치지구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 조사는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質疑要旨)

발산1동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따른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김포공항 확장공사 이주단지과 같이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 강구요망

(答 辯)

○우리 시에서는(발산1동) 강서구 외발산동 96번지 일원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54,000평 건물 25,000평)을 건설하면서 건설부 지내 거주자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의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거주자에게 이주단지(택지)를 공급하면 대도시내 토지가 절대부족하며 토지점유비율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향후 공공사업시행시마다 이주단지(택지)를 조성하여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공사업시행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며, 우리 시에 국한된 사항만이 아니며 전국적인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거주자이주대책은 거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안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여러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質疑要旨)

○마곡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을 해제할 용의는?

○해제용의가 없다면 구청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와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答 辯)

○당초 마곡지구 개발계획은 21세기의 개방화에 대비하여 국제업무기능 단지로 조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미개발 토지의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으나,

○그러나 새로운 시정의 방향과 실질적인 시민 삶의 질 개

선이라는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에 우선 투자가 필요하고, 대규모 미개발 녹지공간의 환경보전 필요성과 장래 토지자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었음

○본 사업은 도시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개발 사업으로 그 성격상 구 단위에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앞으로 해당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난개발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도시계획(시가지 조성사업)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겠음.

○李允中 議員;

○鄭在天 議員;

(質疑要旨)

○서울시의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이윤중 의원)

○특별시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는 수용하여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입장은?(정재천 의원)

(答 辯)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21세기 대비 국제화기능 수용과 관련하여 특섬지구개발기본계획에서 구상되었으며,

○약 5천석 규모의 컨벤션센터와 관련시설로서 숙박시설, 전시장 등을 설치하고, 상호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배치할 계획임.

○시행방법으로서는 공영개발에 의한 방식과 일정면적의 토지 등을 공공 귀속시킨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발권을 허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음.

○그러나 특섬지역 전체 사유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토지소유자에게도 지나친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李允中 議員;

(質疑要旨)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자동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오존 경보 제를 활용한 차량통행 제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등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答 辯)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실태는

· 최근 자동차의 증가로 대기오염원 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의 비중은 '94년에 77%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92년 62%, '93년 72%

· 이중 경유사용 자동차는 전체 차량의 22%이나 자동차오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버스,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량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경유자동차(452천대) : 중 , 소형 390천대, 대형차 62천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 매연의 배출허용기준을 '95년에는 40% 이하에서 금년에는 35%, '98년에는 25% 이하로 강화하고

· 경유자동차의 매연저감을 위해 '95.3-7월까지 시범적으로 26대에 매연후처리장치를 부착, 현재 성능, 내구성 등을 시험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을 '96년 2월 확정 고시하였고, 성능기준 등이 적합하다고 인증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부착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98년 이후 신규 차에 대하여는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음.

- 시내버스의 대폐차시에는 현행 운행 중인 185마력인 버스를 230마력의 고출력 버스로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 완료하고,

- ※'95.12월말 현재 교체 실적 : 8,725대 중 3,512대 완료 (40%)

- 소형 경유자동차의 연료를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LPG로 전환토록하고, 압축천연가스(CNG)차량 등 저공해자동차 운행방안을 연구 검토할 계획임.

- ※'95.12월말 현재 LPG전환실적 : 452,000대 중 28,000대 (6.2%)완료

- 위와 같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동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배출 오염물질은 '93년 383천 톤에서 '94년 351천 톤 8% 감소되었고, 이산화질소 및 오존오염도는 '93년 이후 '95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한 운행제한계획 및 오존경보제를 활용한 차량통행제한계획과 관련하여

-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저감을 위해 차량운행제한 등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으나, 일본에서 자동차질소산화물특별조치법을 제정,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도 이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부에 '95.12월에 법 제정을 건의하였고 환경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 서울시의 오존오염도('95년 최고치 0.16ppm/시간)는 차량통행을 제한할 만큼 중대경보수준이 아님.

※오존경보기준

· 주의보: 0.12ppm/시간, 경보 : 0.3ppm/시간, 중대경보 : 0.5ppm/시간

(質疑要旨)

대기 중 분진방지를 위한 중수도 활용계획과 물청소차의 확대 운영 및 세차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제재대책에 대하여?

(答 辯)

○일부 선진대도시(파리시)에서 중수도를 활용한 도로 물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도로상의 물청소, 녹지대 물주기 등 중수도를 다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철역 지하수 발생 현황을 조사 한바, 제1기 및 제2기 5호선 개통구간의 지하철역사에서 1일 7만여 톤의 지하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금년에 타당성조사와 시범구간을 선정, 설계하여 '97이후 시행할 계획임.

○현재 도로 청소는 물살수 청소차 26대, 진공흡입 청소차, 90대로 하고 있으며, 물살수차는 먼지 제거 효과가 적어 먼지 진공흡입청소차를 '96년 5-9월까지 50대를 추가구매, 총 140대를 매일 운행하여 도로먼지를 저감토록 하겠음.

○또한 세차되지 않은 영업용 차량 등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에 의거 과징금(6-1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더러운 차가 시내에 운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음.

(質疑要旨)

한강지천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인접도시나 관련부처와의 협조방안에 대하여

(答 辯)

○한강지천 현황은

· 35개 지천으로써 이중에서 한강수질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서울시계 상류의 지천으로는 구리시의 왕숙천이 있고 서울시계내에는 탄천, 중랑, 안양천 등이 있음.

· 수질오염도는 '95년도의 경우 BOD가 왕숙천은 6.1ppm, 중랑천은 30.5ppm, 탄천 15.9ppm, 안양천 13.5ppm임

○인접 도시와 추진하고 있는 지천 수질개선대책은

·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하수(10만톤/일)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고, 하남시 발생하수(5만 톤/일)는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고 있음

· 또한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수 관로를 잠실수중보 하류까지 설치하여 방류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 잠실수중보에서부터 팔당호까지의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서울시, 경기도, 한강환경관리청 등의 합동단속반 4개 반(12명)을 編成하여 갈수기대책의 일환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96.1-4)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은

· 한강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은 13개소 115만 톤/일임

· 또한 증설공사중인 성남시, 안양시, 구리시 등 3개시의 47만 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의정부시, 안양시 등 4개시에서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폐수 배출업소 1,208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촉구해 나가겠음.

· 또한 지천별로 한강환경관리청, 지치구, 인접시·군 등 관계기관과 정화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질관리대책을 협의, 추진하고, 오·폐수 배출업소 합동단속, 하천정화활동 공동실시 등 인접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음.

(質疑要旨)

시에서 징수 대행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대기오염 개선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答 辯)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현황은

·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93년부터 일정면적의 시설물과, '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연 2회 구청장이 부과하고 있으며

· '93-'95년까지 3년 동안 총 1,053億원을 징수하여 전국 대비 46%를 서울시민이 부담하였고, '96년 1기분에도 344億을 부과하였으며, 이제까지 징수금의 10%상당액만을 징수비용명목으로 교부받고, 나머지 90%는 국고인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고 있음

○대기환경개선비용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 우리 시에서는 부담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위하여 '95년까지 7회나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금년 3월에도 건의한 바 있음.

· 특히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유차 매연후처리장치 부착을 위하여 '96년도 시범부착 차량(2,038대)에 대한 92億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97년도 일반차량 부착(30,853대) 비용 1,234億원에 대한 50% 국고지원 등을 요청한바 있

으나('95.8.14)

·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은 신경제 5개년계획('93-'97)이 끝난 후 적극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회신이 있었음.

○앞으로 부담금 교부율 상향조정을 위하여

· 서울 시민이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서울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바, 현행의 징수비용 10%를 환경개선비용 50%로 상향조정하여 교부해 줄 것을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겠으며,

· 특히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요청하여 서울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池昌洙 議員;

(質疑要旨)

배수지청소 일자별 청소실적은?

(答 辯)

배수지별 청소실적(수록생략)

○金鍾來 議員;

(質疑要旨)

쓰레기 처리비의 재정자립도는 종량제 시행 이전보다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격봉투의 가격을 인상하여 직영 청소재정적자를 보전하려는 것은 청소대행업체의 흑자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答 辯)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비 재정 자립도는

· 종량제 시행 이전인 '94년도에 비하여 직영인 경우 11.6% 향상되었으나('94년 20%→'95년 31.5%)

· 인건비가 7%인상(1일 16,830원→17,900원)되고, 수도권 埋立地 반입료가 50%인상 (1톤당 5,500원→8,290원)되는

등

· 원가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임

○다만, 규격봉투의 가격을 일시에 인상할 경우

· 서민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봉투 가격의 대폭인상을 자제하되,

· 인상률을 15%선으로 하여 금년 5월로 분산하여 인상하도록 자치구에 규격 요청한바 있으며

○규격봉투의 가격인상에 따른 수입이 청소대행업체에 그대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 현행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대행체제를 원가계산 등에 의한 경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 대행체제개선안 마련 시까지 자치구별로 규격봉투 가격 인상분중 적정액을 회수하여 자치구 재원으로 활용토록 지도하고

· 금년 중 원가계산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대행계약 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음.

○趙相動 議員;

(質疑要旨)

도봉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분양아파트 분양가 및 임대아파트 임대료산출기초 및 근거, 입주대상주민과의 금액산정 차이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가이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특히 분양가에 동의하지 않고 버티게 될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또, 동지역에 대한 체육시설계획과는 시기적으로 맞물리지는 않을 것인지?

(答 辯)

○도봉 1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5.12. 지구지정, '90.6.26. 사업시행자 지정, '91.5.13. 사업개선계획고시되어 공동주택 2,450호(분양1,716 임대 734)를 건설계획으로 '92.5월부터 보상 및 철거 후 '92.12월 착공하여 '96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의 분양가 결정기준은 도시개발공사 분양규정 제4조, 제5조 및 분양규정시행내규 제6조에 의거 건설원가를 산정 후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제반 분양여건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도봉 1지구의 분양아파트분양가는 현재 건설원가를 산정 중에 있으며 향후 건설원가 산정후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있어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산정은 '91.4.18 건설교통부고시 제203호 및 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시행내규 제7조에 의거 '86 년도 기준고시금액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과 년수에 따라 연 5%복리로 승하여 산정한 금액에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 (108,920원)×(1+0.05)ⁿ×아파트전용면적"으로 임대료는 "표준임대료(1,332원)×(1+0.05)ⁿ×아파트전용면적"으로 산정합니다.

○아파트분양가에 대하여는 입주대상 주민이 저소득계층임을 감안하여 주민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이주단지시설부지에 계획 중인 체육시설사업은 가이주단지 시설입주민이 아파트에 입주 후 시행되도록 추진기관인 도봉구청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質疑要旨)

1)방학천정비사업은 제일시장 상류를 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시 복개를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천이라는 특수성이 고려될 이후의 계획은?

2)공사구간내 지장물 철거와 관련되는 33가구는 평당 58만원이내의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과, 이주대책자에게 지급예정인 국민주택분양권 및 임대주택 입주권이 무상이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수 백만 원의 보상비를 받아 육천만원 이상을 지불하기에는 저소득층 주민들로서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3)현행 법규대로 적용하면 보상금 총액이 적어 가옥주는 전세금을 지불하고 맨몸에 거리로 내쫓길 신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4)도시계획사업인 방학천 정비사업의 현재 진척현황 개요와 향후 계획은?

(答 辯)

○방학천 정비사업은 '92.3-'92.11까지 기본 계획이 완료되어 '92.12.10. 시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제일시장 상류만 복개토록 심의하여 도봉구청에 통보한 바 있으나

○도봉구청에서는 '94년도에 '95년 사업으로 방학천을 복개를 하지 않고 옹벽으로 개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이를 검토한바,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는 복개보다 옹벽으로 공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95년도부터 사업비를 반영하여 우선 도봉구청에서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도시계획사업인 방학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공사구간 내 저촉되는 지장물은 도봉구청 조사에 의하면 무허가건물 총 31개동으로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옥주는 24세대이고 세입자는 46세대입니다.

○보상금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지역의 무허가건물은 1960년대 하천변에 자생된 노후건물로서, 규모가 작아 보상금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금액은 아직 결정된바 없으며, '95.10.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통지를 하였고, 앞으로 '96.4월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은 공공용지의취득에관한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가옥주에게는 건물보상금과 2개월분의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지출비, 이사비가 지급되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로 3개월분의 도시근로자평균가계지출비와 이사비가 지급되는 이외에 별도 보상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이주대책으로서 서울시 국민주택특별 공급지침에 의거 주택소유자에게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주택분양권을,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 전용면적 12평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천 정비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 진행 중이고, 용벽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이 발주 중에 있습니다.

○白懿宗 議員;

(質疑要旨)

1. 주차장이나 공원용도로 쓰이는 하천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이유?
2. 일부 지하철도 저축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사유
3. 소유권변경 경위
4. 주차장 건설 내용 및 운영주체 등에 대한 내용

(答 辯)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지역은 현재 하천구역으로 일부는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또 제방부지 일부는 공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이 지역에 주택 등을 짓도록 허용코자 하는 것이 아닌가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인 서울시 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지고 그 위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하천, 도로, 공원, 철도, 주차장 등 도시계획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과 공공시설은 중복이 되게 됨을 답변드리며, 또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도 하천부지에 집을 짓는 등 변동사항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속철도가 일부 저축되는 내용은 지하철1호선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 이를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하는 것이며

○소유는 당초부터 국유로 되어 있었으나 토지대장에 미등록 상태로 있다가 지난 72년과 95년 각각 신규 등록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현실에 부합되도록 기존의 상업지역을 오히려 이용도가 낮은 주거지역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변경 후에 하천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서울特別市教育廳】

○李允中 議員;

(質疑要旨)

한서초등학교의 부지중 약 700여 평의 경사지를 교육용 재산에서 용도 폐지 후 마포구청에서 매입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매각할 용의는?

(答 辯)

○한서초등학교 부지중 일부를 마포구청에서 매입을 신청할 경우 서부교육청과 마포구청의 협의 하에 관련법규에 의거 매각을 검토하겠습니다.

-매각절차

- 행정재산 용도폐지(교육청)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교육위원회)
- 도시계획시설 변경(서울시)
- 매각(교육청)

○金鍾來 議員;

(質疑要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성될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자율적으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재정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동 위원회가 1, 2학년에 강제적인 보충수업 실시를 결정할 경우의 문제점과 교육감의 지도감독으로

시정할 수 있는지?

(答 辯)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③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서울特別市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안)제9조, 제10조, 제21조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등의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학교장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봄.

○그러나 만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강제적인 보충수업을 실시하기로 건의하고 운영방법을 심의하여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거나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인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생, 학부모의 빈축을 사는 등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조항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白南善 議員;

(質疑要旨)

서울시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개교한 학교 중 29개교에 인도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95년도에 학교 앞 도로에서 71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은?

(答 辯)

1. 29개교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데 대한 조치 및 대책

가. 조치

○ '95년도에 서울시내 택지개발지구내 신설교를 포함하여 520개교 중 213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정하였으며,

○ '96년도에 246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 시 경찰청에서 112개에 설치 예정임.

나. 대책

○ 학교 앞 필요 교통안전시설을 계속 보완요청 시정코자 합니다.

2. '95년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71명이나 당한 데 대한 대책

가. 과거의 활동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 학생, 주변 활동, 녹색 어머니 등이 등, 하교시 지도하였으나, '95년도에 71명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나. 앞으로의 대책

앞으로 각급학교 학생 등·하교 신간에 주변교사, 학생, 녹색어머니 등 학부모단체와 협력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 하고 교과교육, 특별활동, 행사교육, 계기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지도 내용도 반영토록 지도하겠습니다.